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만우** · 이상호*** · 심준용****

<요 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성과평가 내용 및 항목별 점수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해 세제분야 성과평가 항목 간 상관관계 및 정책중요도와 성과평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 중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평가제도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한 현행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의 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각 정책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안과 정책효과성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부서의 보상 등에 반영하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적인 평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목표와 평가방법 등의 적절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상시평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성과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헌 검토를 주로 수행한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성과평가 점수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정부정책 성과평가, 공공부문 성과관리, 조세정책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eemm@korea.ac.kr, 주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sangholy@korea.ac.kr,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simjunyong@korea.ac.kr, 공동저자

I. 서 론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세제분야 정책성과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며 세제분야 성과평가의 내용 및 항목별 점수 자료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이용해 성과평가 항목 간 상관관계 및 정책중요도와 성과평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 부처별로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각 부처 간 평가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김주환 2013).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짐에 따라(장지인 외 2008)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됐으며 이를 통해 자율, 통합, 성과를 지향하는 성과관리체제가 구축됐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전반적인 평가제도 운영 사항에 대한 질적인 문헌연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영역에 대한 성과평가제도의 연구나 실증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정책성과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¹⁾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현행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정책추진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책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점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부서의 기본 과업과 성과평가 대상 정책 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상 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의 기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제를 관리과제로 설정하고 시기별로 해당 과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해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는 성과평가 점수를 조직의 보상과 지나치게 연계하기 때문에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정책목표가 부서 업무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는 특수한 정책목표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공무원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

1) 연구자 중 1인이 연구대상기간 중에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부처의 자체평가 점수 이외에 평가위원의 점수는 공개되지는 않으나, 자체평가 점수와 평가위원이 부과하는 점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쇄물로 획득한 자체평가보고서 점수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자료 상 제약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다소 편의가 개제될 가능성이 있다.

가 있다.

셋째,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법률 개정 여부’가 평가기준에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개정된 법률의 적합성 또는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일부 계량적 평가요소도 ‘회의 개최 횟수’ 등과 같이 회의의 중요성과 규모 및 소집의 난이도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과평가위원회가 목표와 평가방법 설정에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이 단계에서 평가전문가를 활용해 부서별로 공정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외부위원이 현직 대학교수와 변호사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어 충분한 시간투입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퇴직 대학교수 중에서 1인 또는 2인의 위원을 선임해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확정 단계부터 평가체계를 보다 충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상시평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획재정부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세제분야 정부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책평가제도 연구는 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평가제도와 관련한 문헌검토를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했으나 본 연구는 실제 성과평가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 혹은 특정 영역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세제실의 세부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점은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는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정부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현황 및 평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 IV 장에서는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제 V 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관련 연구의 흐름

1.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 현황

가. 세제 분야별 주요 정책

2011년부터 2016까지 총 6개년 동안의 조세 관련 주요 정책은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 기업과세 선진화, 납세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및 관세정책 등은 중·장기적

2) <표 1>에 제시한 주요 관리과제는 일부 유사한 정책 과제를 범주화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각 연도별 보

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관리됐지만 다른 일부 정책은 해당시기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재정수요를 고려한 중·장기적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마련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세워 관련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조세정책의 경우에도 중·장기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표 1〉 2011~2016년 세제 분야별 주요 관리과제

주요 관리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세 정책 전반>						
기업과세 선진화	○	○	○	○	○	○
납세편의 제고	○	○		○		○
근로자, 중산·서민층 관련 세제지원	○	○			○	○
금융소득 세제 개편		○			○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	○	○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마련			○	○	○	○
<재산·소비세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	○		○	○	○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	○	○	○	○	○
소비세제 개편			○	○	○	○
<관세 정책>						
관세제도 선진화	○	○	○	○		○
역외 탈세 방지	○	○		○	○	○
국제 조세 협력 기반 강화	○	○	○	○	○	○
FTA 협상 및 체결효과 극대화	○	○	○	○	○	○

(자료 : 기획재정부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참조, 재작성)

고서 상 실제 제시된 명칭은 <부록 1>에 기술했다.

나. 세제실 조직 구성

2014년까지 세제실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국 및 관세정책국 총 4개의 부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조세기획관은 전반적인 조세정책 운용 방향을 담당하면서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분야의 정책도 맡아왔다. 조세정책관은 근로장려세제나 기업과세 선진화 정책 등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면서 조세법령 개편과 같은 조세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도 담당했다. 2015년부터 세제실은 조세기획관과 조세정책국을 조세총괄정책국 및 소득법인정책국으로, 관세정책국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FTA 관세 협상 등 국제조세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관세정책국에 국제조세분야 관련 정책을 이관했으며, 조세총괄정책국은 조세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도록 했다. 조세법령 개편과 같은 조세정책 전반에 관련된 정책 역시 조세총괄정책국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소득법인정책국의 관리 정책 범위를 법인·소득세제로 명확하게 정했다.

2015년부터 이루어진 위와 같은 조직 개편은 부서별 업무 전문성과 추진 정책의 성격 및 평가 관리 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세제분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박경원 등 2011 ; 이광희·이석민 2014)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김주환 2009·2013) 기대된다.

다. 평가 절차

세제분야 정책성과평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성과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서는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세제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그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민간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세제실은 매년 국정과제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각 부서별 성과목표를 수립하며, 각 부서에 서는 해당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관리과제를 도출한다. 관리과제별로 해당 관리과제와 연계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해당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해당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다.³⁾

3) 예를 들어 2016년 세제실의 전략목표는 ‘조세·재정 운영 효율화’이며, 조세총괄정책국은 이러한 전략 목표와 연계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관리과제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고용 및 신성장 친화적 조세감면제도 운영’, ‘납세자 권익 제고 및 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세제합리화’를 도출하였다. 관리과제 중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가지 정책 방향, ‘조세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제고’ 및 ‘조세정책 수립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2가지씩, 총 4가지의 추진 과제, ‘단기·중기 조세정책

평가위원회는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지표는 각 부처별 업무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지표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나 외부자문을 적극 활용하며, 평가지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수립의 적절성·시행과정의 적절성·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등의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장한다(강적성·이환성 2011; 황혜신·김현준 2013). 세제분과의 정책성과 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이 되며, 문제점이 발견된 정책에 대해서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를 수행하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절차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세제실 내 총 4개의 각 부서는 관리과제별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점수는 <표 2>의 평정근거에 따라 관리과제 하나 당 100점 만점으로 취합한다. 이후 각 관리과제에 대한 점수는 사전에 설정한 정책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해당 부서의 최종성과로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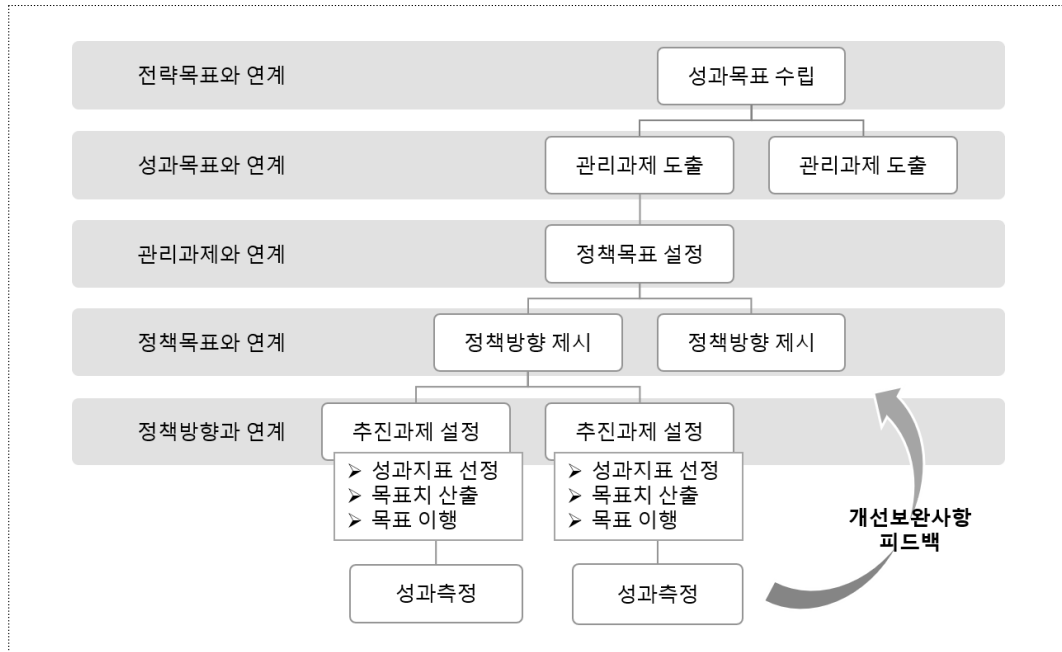
<표 2> 세제분야 정책성과의 평가지표, 세부 평정근거 및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정근거	배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20점)	계획수립시 의견수렴, 사전조사의 충실성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관련통계 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10점
	정책분석의 적절성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10점
시행과정의 적절성 (3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점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의 적절 대응 여부	10점
	관계기관·정책 등과의 연계성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10점
성과 달성도 (30점)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목표를 100% 달성	1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5점 10점
정책 효과성 (20점)	정책효과 발생 정도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20점
합 계			100점

(자료 : 기획재정부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연계 강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제출’, ‘전문가 작업반 운영’,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세제분야 부서별 정책성과 평가 절차 모식도



(자료 : 기획재정부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야 참조, 제작성)

2. 정부정책평가 관련 연구의 흐름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평가 제도의 목적은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각 정책을 수행한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에 따라 정부부처에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일부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거나, 주요 부처 간 평가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김주환 2013).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재정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해지면서(장지인 외 2008), 자체적·종합적·체계적 성과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GAO 1997·2004 ; 김주환 2009). 이에 우리 정부는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도입과 함께 자율·통합·성과를 지향하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반적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타당성(허만형 외 2008), 성과관리시스템의 적절성(이윤식 2007 ; 박경원 등 2011 ; 윤수재 2011 ; 이광희·이석민 2014), 평가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김주환 2009·2013; 강정석·이환성 2011; 황혜신·김현준 2013)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부처별 자체평가 역량이나 평가제도의 자율적인 운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중복된 평가업무 및 과도한 평가업무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평가제도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헌연구다. 부처별 특정 영역에 대한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세제와 관련한 정책의 성과평가 제도를 검토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⁴⁾ 전반적인 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못지않게 특정 영역별 세부적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은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⁵⁾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세제분야 정책성과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 성과평가 내용 및 항목별 점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세제분야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세제정책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다.

III.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 검증

1. 연구 설계⁶⁾

세제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각 부서의 관리과제별 총점은 100점 만점이다. 관리과제별 점수 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절성·시행과정의 적절성·성과달성

- 4) 일부 중앙부처의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가 있으나(이윤식 2007), 그 대상에 세제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례분석 또한 주요 기관의 균형성과표(BSC) 구성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다.
- 5)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는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되는 결과보고서에는 정량적인 평정점수를 제시하지 않고, ‘우수’ 등급을 받은 관리과제, ‘미흡’ 등급을 받은 관리과제 등을 나열하고 정성적인 총평만을 제시한다. 세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평가항목, 항목별 평정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아 특정 분야의 세부적인 성과평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6) 본 연구는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실증분석 연구와는 다르게 세제분야 정책성과평가 제도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증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단위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국가 수준이어서 부처 업무의 특수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분야의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예측함에 있어 국가

도·정책효과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평가지표의 선정부터 성과측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이 관련 분야 전공의 대학교수·공무원·실무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성과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전에 각 관리과제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정책중요도를 백분위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역량(허만형 외 2008), 자율적 운영(김주환 2009)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평가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별 관리과제 수준에서 평가항목별 점수나 정책중요도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항목별 점수, 정책중요도 비중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개별 관리과제 수준에서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책효과성과 기타 평가항목 점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측정치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Yang and Holzer 2006). 세제정책의 최종수요자는 관련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며, 최종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평가지표는 정책효과성이다. 따라서 성과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과제별 정책효과성과 기타 평가항목 점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세제분야의 여러 업무가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관리과제별 정책중요도와 기타 평가항목 점수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에서는 성과평가제도가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관리과제일수록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중요도가 높은 과제가 더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과제별 정책중요도와 총점 간 연도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관리과제에 대해 연도별로 전반적인 성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각 부서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중요도와 각 평가항목 점수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 식(1)과 같다.

수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활용할 경우 가치중립적으로 검증 타당한 가설을 수립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별도의 가설을 수립하지 않고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하며(안숙찬 2017), 이를 토대로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7) 단, 모든 성과지표가 객관적으로 산출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점수로 인해 연구결과에 편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전문가평가 및 설문 부분이 전체 성과지표의 9.35%에 해당하고, 해당 평가자의 구성 역시 학계 전문가 혹은 관련 실무 전문가로 이루어짐을 미루어 볼 때, 결과 상 중대한 편의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PERFORM_{i,t} = \beta_0 + \beta_1 IMPORTANCE_{i,t} + \Sigma DivisionDummies + \Sigma YearDummies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PERFORM_{i,t}$ = 관리과제 · 연도별 {추진일정충실성 점수, 상황변화대응성 점수, 성과목표달성도 점수, 정책효과성 점수, 총점, 우수 또는 미흡 과제 여부 더미} ;

$IMPORTANCE_{i,t}$ = 관리과제 · 연도별 정책중요도 비중(%).

2. 실증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표 3>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부서가 매년 3.8개(=91/4×6)의 관리 과제를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국)이 매년 5개로 비교적 많은 관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각 관리과제를 ‘우수=1’ 또는 ‘미흡=0’으로 구분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재산소비세정책국이 0.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은 0.91점의 소득법인정책국(조세정책관)이고, 조세총괄정책국(조세기획관)이 0.8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세정책국은 0.67점으로 4개의 부서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기록했다.⁸⁾

<표 3> 기술통계

연도	부서별 관리과제 수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국	관세정책국	합계
2011	3	4	4	5	16
2012	3	5	4	5	17
2013	3	4	3	5	15
2014	3	4	3	5	15
	조세총괄정책국	소득법인정책국	재산소비세정책국	관세국제조세정책관	합계
2015	3	3	3	5	14
2016	3	3	3	5	14
합계	18	23	20	30	91
평균점수 ^{주1)}	0.83	0.91	0.95	0.67	0.82

주1) 부서별 평균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연도-정책별 평가점수 수준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경우(평균 초과) 1점, 성과가 저조한 경우(평균 이하) 0점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산술평균하여 부서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8)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분야 자체평가보고서에 제시된 항목별 실제 평정점수를 활용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인 기술통계로 제시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와 보고서를 살펴보면, 항목별 평정점수는 제시하지 않으며 ‘우수’ 또는 ‘미흡’ 등의 정성평가 결과를 기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관리과제에 대한 점수를 ‘우수’ 또는 ‘미흡’으로 구분한 수준에서 관련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나. 정책효과성과 기타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성과평가 항목 간 일변량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좌측하단은 Pearson 상관계수이고, 우측상단은 Spearman 상관계수이다. 추진일정충실성, 상황변화대응성, 성과목표달성도는 총점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과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시행과정이 적절히 잘 이루어졌고, 관련 법안의 입법 혹은 개정 등 목표한 성과가 충실히 달성된 경우 전체적인 관리과제의 성과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이 적절한 경우 목표 성과의 달성 정도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행과정과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상호 간에 잘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책효과성의 경우 총점과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248)를 보이지만, 추진일정충실성, 상황변화대응성 및 성과목표달성도와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Pearson : -0.024, -0.022, -0.062 ; Spearman : -0.028, -0.022, -0.06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별 추진계획이 잘 준수되었고, 시행과정이 적절히 잘 이루어졌으며, 입법·개정 등 목표한 성과지표를 우수하게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정책의 효과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효과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지표 들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미흡했거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 성과평가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

	(1) 총점	(2) 추진일정충실성	(3) 상황변화대응성	(4) 성과목표달성도	(5) 정책효과성
(1) 총점		0.467*** (0.00)	0.375*** (0.00)	0.922*** (0.00)	0.323*** (0.00)
(2) 추진일정충실성	0.693*** (0.00)		0.803*** (0.00)	0.449*** (0.00)	-0.028 (0.79)
(3) 상황변화대응성	0.557*** (0.00)	0.413*** (0.00)		0.364*** (0.00)	-0.022 (0.83)
(4) 성과목표달성도	0.871*** (0.00)	0.416*** (0.00)	0.389*** (0.00)		-0.064 (0.55)
(5) 정책효과성	0.248** (0.02)	-0.024 (0.82)	-0.022 (0.83)	-0.062 (0.56)	

1) 좌측 하단 계수값은 피어슨 상관계수, 우측 상단 계수값은 스피어만 상관계수

2) 괄호 안은 p값

3) *, ** 및 ***은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 정책중요도와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표 5>에서는 연도별 관리과제의 정책중요도와 총점 간의 일변량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자료상 관리과제별 총점과 정책중요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불가능한 2011년도와 2014년도를 제외하면, 2012년도 및 2013년도에는 관리과제별 총점과 정책중요도와 유의하지 않은 양(+)의 상관관계(0.134, 0.264)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520)가 나타났고, 2016년도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561)가 발견됐다. 이는 2015년도 이후부터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관리과제에 대하여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요자 관점의 정책 추진과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이찬구 2009 ; 강정석 · 이환성 2011 ; 황혜신 · 김현준 2013)로 미루어 볼 때, 세제실의 업무 성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연도별 정책중요도와 총점 간 상관관계 분석

	연도별 정책중요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총점	.	0.134 (0.61)	0.264 (0.34)	.	0.520* (0.06)	0.561** (0.04)

1) 계수값은 피어슨 상관계수

2) 괄호 안은 p값

3) *, ** 및 ***은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라. 회귀분석 결과

<표 6>에서는 총 91개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부서별 ·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정책중요도와 다수 평가 지표들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앞선 Pearson 또는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은 일변량 분석으로 부서별 ·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국)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협상 · FTA 추진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반면, 재산소비세정책국은 부동산 세제개편을 담당하면서 특정 연도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정책을, 다른 연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부서업무의 특성 상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시계열적 상관관계가 낮은 한시적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부서별 특성 및 시계열적 특성이 결과에 미칠 편의를 통제하고자 본 분석에서는 관련 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책중요도와 평가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정책중요도는 성과목표달성도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034, t값=4.33), 총점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051, t값=2.84)를 보인다. 정책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우수’ 관리과제에 선정될 확률도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132, z값=2.83). 한

편, 정책중요도 역시 정책효과성과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0.002, $t_{값} = -0.84$)를 보여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관리과제일지라도 정책효과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표 6〉 책중요도와 성과지표 간 회귀분석

$$PERFORM_{i,t} = \beta_0 + \beta_1 IMPORTANCE_{i,t} + \Sigma DivisionDummies + \Sigma YearDummies + \varepsilon_{i,t}$$

종속변수 :						
변수	(1)	(2)	(3)	(4)	(5)	(6)
	추진일정 총실성	상황변화 대응성	성과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총점	우수=1
	OLS	OLS	OLS	OLS	OLS	Probit
정책중요도	0.018 (1.26)	0.001 (1.23)	0.034*** (4.33)	-0.002 (-0.84)	0.051*** (2.84)	0.132*** [2.83]
절편	9.335*** (17.05)	9.976*** (342.72)	13.865*** (50.95)	20.102*** (212.90)	98.277*** (141.75)	-4.110** [-2.42]
부서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91	91	91	91	91	60
R ²	0.200	0.096	0.524	0.091	0.438	
Pseudo - R ²						0.501

1) 열(1)~(5)의 괄호 안은 개별 정책 수준의 군집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이분산성을 조정한 $t_{값}$

2) 열(6)의 대괄호 안은 개별 정책 수준의 군집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이분산성을 조정한 $z_{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식(1) 하단을 참조

마. 강건성 분석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중요도는 해당 과제의 총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과거에 비해 2015년도 이후 그러한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관리과제에 대해 비교적 성과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총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하여 정책중요도를 임의적으로 높게 조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로는 이러한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 평가항목별 성과평가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여 평가결과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책중요도 비중(%) 또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민간위원의 자문을 토대로 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본 연구결과에 편의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2SLS 반증검증(falsification test)을 수행함으로써 역(-)인과관계의 영향을 검증한다(Roberts and Whited 2012).

만약 정책중요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책효과성이 높은 관리과제에 대해 중요도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기타 성과지표들의 경우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나 법안의 제·개정 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업무 추진을 하는 경우 우수한 점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반면에 정책효과성에 대한 세부 평정근거를 보면,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 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및 해당과제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성과관리의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식(2)와 같이 정책효과성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정책중요성을 예측하는 1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식(3)에서 2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정책중요성 변수와 총점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IMPORTANCE_{i,t} = \alpha_0 + \alpha_1 EFFECT_{i,t} + \Sigma DivisionDummies + \Sigma YearDummies + \eta_{i,t} \quad (2)$$

$$TOTALPERF_{i,t} = \beta_0 + \beta_1 predIMPORTANCE_{i,t} + \Sigma Division Dummies + \Sigma YearDummies + \varepsilon_{i,t} \quad (3)$$

여기서, $EFFECT_{i,t}$ = 관리과제 · 연도별 정책효과성 ;
 $TOTALPERF_{i,t}$ = 관리과제 · 연도별 총점 ;
 기타변수의 정의는 <표 2>와 식(1) 하단을 참조.

정책중요도가 정책효과성에 맞추어 임의로 높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단계 회귀 분석에서 α_1 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수행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예측된 정책효과성과 총점 간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야할 것이다. 즉, β_1 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반증검증 결과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인과관계가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편의를 가져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라 주장할 수 있다(Roberts and Whited 2012). <표 7>의 반증검증 결과, 정책효과성과 정책중요도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0.807, t값=-1.00)를 보인다. 즉, 정책효과성이 높은 관리과제에 대해 정책중요도를 높게 조정했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어지는 2단계 회귀분석에서도 예측된 정책중요도와 총점 간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1.104, t값=-0.97)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7〉 역(-)인과관계 가능성에 대한 2단계 반증검증(falsification test)

$$1st: IMPORTANCE_{i,t} = \alpha_0 + \alpha_1 EFFECT_{i,t} + \Sigma DivisionDummies + \Sigma YearDummies + \eta_{i,t}$$

$$2nd: TOTALPERF_{i,t} = \beta_0 + \beta_1 predIMPORTANCE_{i,t} + \Sigma DivisionDummies + \Sigma YearDummies + \varepsilon_{i,t}$$

변 수	종속변수 :	
	(1) 정책중요도 1-Stage	(2) 총점 2SLS
정책중요도		-1.104 (-0.97)
정책효과성	-0.807 (-1.00)	
절편	47.849*** (2.88)	134.874*** (3.79)
부서고정효과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관측치	91	91
R ²	0.483	-44.637

1) 괄호 안은 개별 정책 수준의 군집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이분산성을 조정한 t값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EFFECT*=정책중요도 ; *TOTALPERF*=총점 ; 기타변수의 정의는 <표 2>와 식(1) 하단을 참조

IV.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관성 부족에 대한 대안 강구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행과정의 적절성이나 성과달성도 등의 평가점수는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성과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정책효과성의 경우 기타 성과지표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정책효과성의 평가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Yang and Holzer(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측정치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제 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국민이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수요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책효과성을 최대한 정교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행과정이 적절하였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충실히 이루어졌음에도 정책효과성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효과성 평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정책성과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다보니 현실적으로 정책효과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정된 기간 동안 정책 효과를 점수화 해야하는 일정 상 일부 평가의 경우 해당 기간 신문기사에 나타난 여론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보다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인 평가를 중시하게 되어 정책 목표에 맞지 않는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책효과성에 대한 측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효과성이 다른 성과지표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분야 각 정책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안과 정책효과성 평가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마련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과는 상충될 수 있어 일정 기간을 두고 장기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2016년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시한 <표 8>을 살펴보면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중·장기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과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단기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장기 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자본시장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1년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단순 지수 수익률로 해당 정책에 대한 시장반응을 측정한 경우가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위험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세제 정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계 및 실무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표 8〉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Panel A :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기본 방향	추진 과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역외세원 확보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투자·창업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세형평성 제고	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제고,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세부담 구축,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제도 합리화	금융세제 합리화,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서비스 개선
Panel B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에 따른 세법개정 주요내용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16년 세법개정(안) 내용
소득·금융과세	비과세 및 공제제도 정비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조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조정
	세원투명성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금융소득 과세체계 정비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
법인과세	창업·성장·퇴출 등 생애주기별 지원	벤처기업 출자액 세액공제 등 벤처투자 지원 기업 구조조정세제지원 보완
	투자·R&D·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신성장산업 R&D세액공제 개편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네거티브방식 전환
	기업·개인소득의 선순환구조 유도	가계소득중대 3대 패키지 보완
재산과세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합리화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마련, 재산평가제도 개선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범위 확대 및 개별소비세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국제조세	역외세원 확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OECD BEPS제도 반영	다국적기업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관세	관세 감면 및 환급제도 합리화	추가 납부세액과 환급금간 상계 허용

(자료 : 기획재정부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야)

2. 기본업무 성과평가와 정책 성과평가의 구분을 통한 적합성 제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성과평가 결과를 부서의 예산·인사 및 보상 결정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제30조). 이러한 규정 하에서는 부서별 업무의 특성이 성과평가와 보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서의 기본 업무가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보상 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의 기본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시기별로 해당 과제의 명칭을 조금씩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부서의 기본업무를 국가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해당 기간의 추진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평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⁹⁾

이 경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비효율적인 평가가 되고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보상에 반영되는 비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인 평가보다는 사전적으로 관리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검증을 통해 부서별로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질적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보완할 방안 강구

현행 성과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항목을 검토한 결과 계획수립적절성·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에 성과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은 단순 형식적인 계량화 지표가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표 9>는 성과지표를 평가의 특성별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한 내역을 제시한다. 성과평가점수가 제도개정 건수나 제도개정 여부로 평가되는 항목이 6년간 70건, 65.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협상 횟수, 협정체결 횟수 등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20건, 18.69%였다.¹⁰⁾ 이는 전체 성과평가지표 중 84.11%가 단순 수행 여부로 평가하는 양적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세입예산 오차율, 할당관세 조정비율 등 목표준칙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되는 요소, 6.54%를 제외하면,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전문가의 평가 혹은 실무자 설문 결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의 요소는 9.35%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정량적 평가 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적 평가지표 역시 단순히 개정 여부, 수행 여부 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9) 할당관세 업무의 경우 관세정책국(관세국제조세정책관)의 고유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정책목표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 경제활력 제고, 관세제도 선진화 등으로 명칭만 바뀐 사례가 있다. 또한, 2013년에는 해당 업무가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전략목표에 연계되어 성과평가에 반영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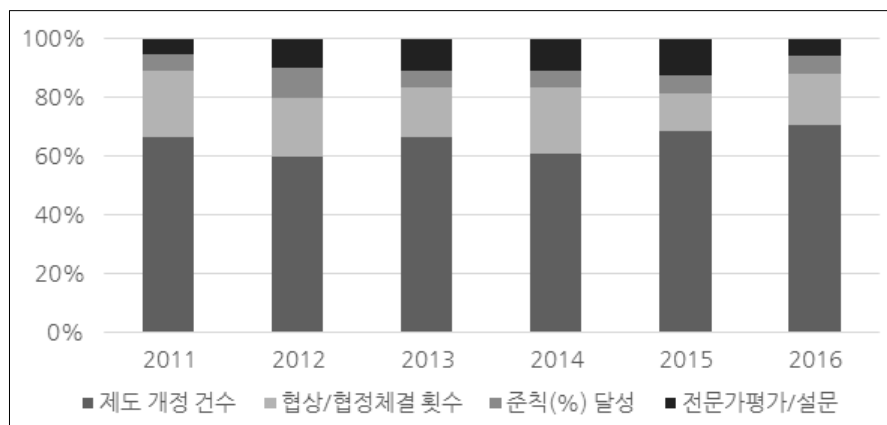
10) <표 3> 기술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6년 관리과제의 총 개수가 91개인데, <표 9>에서 성과지표 총 개수가 107개인 이유는 관리과제별 성과평가 시 2개의 지표를 활용한 과제가 16건 있었기 때문이다.

〈표 9〉 성과지표의 성격별 구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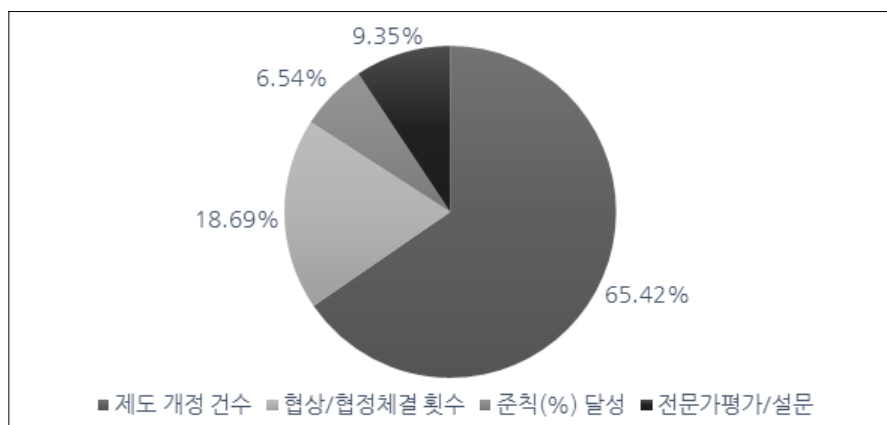
연도	제도 개정 건수	협상/협정체결 횟수	준칙(%) 달성	전문가평가/설문	합계
2011	12	4	1	1	18
2012	12	4	2	2	20
2013	12	3	1	2	18
2014	11	4	1	2	18
2015	11	2	1	2	16
2016	12	3	1	1	17
합계	70	20	7	10	107
(비율)	(65.42%)	(18.69%)	(6.54%)	(9.35%)	(100.00%)

(자료 : 기획재정부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참조, 제작성)

〈그림 2〉 각 연도 성과지표의 성격별 비중



〈그림 3〉 2011~2016년 성과지표의 성격별 총 비중



4.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로 상시평가 유도

성과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자의 본업으로 인하여 평가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따른다. 평가위원회 소집 횟수가 연 평균 5~6회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목표설정부터 평가기준 설정 등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 부서 간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임한 대학교수 1~2인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분기별 추진실적을 비롯해 연간 업무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평가위원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세제분야 정책성과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수행했다. 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성과평가 내용 및 항목별 점수자료가 수록돼 있는데, 이를 활용해 세제분야 성과평가 항목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정책중요도와 성과평가 결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동안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전반적인 평가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문헌연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영역에 대한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연구는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해당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세제분야 성과평가 지표는 크게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성과달성도, 정책효과성으로 구분되며 각 지표별로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시행과정 적절성의 세부항목인 추진일정충실성과 상황변화대응성, 성과달성도의 세부항목인 성과목표달성도와 최종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효과성 점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추진일정충실성, 상황변화대응성, 성과목표달성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시행과정과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잘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그 외 3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와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방법에 미흡한 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세제실 소속 4개 부서가 각 관리과제별로 사전적으로 설정한 정책중요도를 각 추진일정충실성, 상황변화대응성, 성과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성에 대하여 연도별, 부서별 고정효

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중요도와 성과목표달성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정책중요도가 높을수록 해당 관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책추진의 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책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점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행 성과평가제도 하에서는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그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평가하고 점수화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평가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안과 연계성 제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매년 단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과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평가 점수를 조직의 보상과 지나치게 연계하게 되면 정책목표를 부서의 기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과제로 선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정책목표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평가 점수를 보상 등에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 개정 여부’등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계량적 평가지표가 다수 활용되고 있고, 개정된 법률의 적합성 또는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적 평가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정책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상시평가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근하는 업무가 있는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퇴임한 대학교수와 같이 시간 활용에 유연성이 확보된 인사를 1~2인 포함시켜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수립 단계부터 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세제분야 정부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성과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헌 검토를 주로 수행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실제 성과평가 점수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점수가 일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객관적 검증결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참고문헌

- 강정석·이환성. 2011.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자체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1-396.
- 기획재정부. 2011.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 _____. 2012.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 _____. 2013.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 _____. 2014.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 _____. 2015.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 _____. 2016.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 김주환. 2009.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운영평가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 187-218.
- _____. 2013.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 45-67.
- 박경원·임태중·이주혜. 201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6권 제3호 : 75-98.
- 안숙찬. 2017.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8권 제5호 : 111-140.
- 윤수재. 2011. “성과평가모형 적용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1-546.
- 이광희·이석민. 2014.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정보 활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제도신뢰 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3호 : 205-226.
- 이윤식. 2007.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 1-30.
- 이찬구. 2009.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 337-373.
- 장지인·지성권·송신근·신성욱·오상희. 2008.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 제7권 제3호 : 61-105.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허만형·김주환·이석환. 2008.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 1-18.
- 황혜신·김현준. 2013.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의 생산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 15.
- GAO. 1997. Managing for Results : Analytic Challenges in Measuring Performance : 1-44.
- GAO. 2004. Results-Oriented Government : GPRA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Achieving Greater Results : 1-18.

- Roberts, Michael R. and Whited, Toni M., 2012. Endogeneity in Empirical Corporate Finance. *Simon School Working Paper* : 11–29.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1748604>
- Yang, K., and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 114–126.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n Taxation Policy

Manwoo Lee^{*} · Sang Ho Lee^{**} · Jun Yong Shim^{***}

—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among score items used for taxation policy evaluation, and also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on tax policy and relative importance using government reports from 2011 to 2016. Reports used in the paper include specific details of tax policy evaluation and actual scores for each evaluation item. We analyze the adequacy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ax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provide recommendations based on empirical results.

We found following problems based on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irst, there i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on overall policy process and policy effectiveness, therefore we suggest stronger qualification procedures regarding long-term effects of each policy and strengthen the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tax policy application plan and policy effectiveness evaluation. Second, department-level compensation based on policy evaluation scores should be reduced. Third, ex-ante performance target and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instead of mainly focusing on ex-post evaluation. Fourth, we suggest the existe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nd analyze policies on a regular basis.

This paper provides recommendations on government tax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expects to enhance efficiency of taxation policy. Our study extends existing studies by providing empirical results on tax policy evaluation using actual evaluated score in addition to qualitative analysis.

<Key words> 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Taxation Policy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leemm@korea.ac.kr, First Author

** Ph. D. Studen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sangholy@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junyongshim@korea.ac.kr, Co-author

〈부록 1〉 2011~2016년 세제분과 부서별 관리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세기획관>					
• 세수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 세수증가의 정확도 제고	• 증강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마련				
<조세정책관>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정보교환협정 체결 및 조세 조약 체결 추진	• 국제조세분야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제조세협력의 실효성 제고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성장장래력 확충을 위한 R&D • 기업과세 신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 지원 세제 효율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세정책관>					
•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 •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제고	• 비교세 감면제도 정비				
<조세정책관>					
•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 연금소득 • 지방정세 양정화를 통한 조세경의 개선	•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투명성 • 국제조세제도의 정비				
• 기업과세 신고 • 금융소득 과세면탈 방지	• 조세정책에 대한 세입, 역외탈				

(자료: 기획재정부 정책과제평가보고서 - 세제분과 참조)